

의안번호	2208531
의 퇴 인	백선희 의원
회 답 일	2025.05.26.
추계번호	25C1136

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2 (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)	(제3항)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교육, 의료,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2 (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대안교육기관장이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고,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, 의료,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안 제17조의2제1항은 대안교육기관장의 분리조치 권한에 대한 규정이고, 동조제2항은 대안교육기관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분리조치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,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함에 따른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그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

- 안 제17조의2제3항은 교육감이 분리조치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,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, 개정안에 따른 지원이 교육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지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,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원의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움
 - 현재 '24년 기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259개이며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¹⁾
 - 참고로,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은 '24년 기준 국고보조금 1.5억원, 특별교부금 5억원임
- * [참고자료]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-
- 1)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)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
 2.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
 3.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 4.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
 5.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
 6.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

(단위: 개)

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
74	9	7	7	12	11	2	1	69
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합계
8	6	9	7	11	11	7	8	259

주: '24.10.16. 기준

자료: 교육부